

2012년 10월 제31호
ISSN 1976-6041(On-Line)

치안정책리뷰

POLICE SCIENCE INSTITUTE REVIEW

발행인 한광일 편집인 조요셉 전화 (031)285-0183 FAX (031)620-2989

권두언

치안정책의 패러다임 변혁이 필요하다 이웅혁 경찰대학 교수

연구특집

스페인 경찰제도 이해 및 시사점 치안정책연구소 김재철 연구관
중동 민주화와 이슬람 테러전망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박경기 경사

치안정책동향

해외 경찰관련문헌 조사방법 -일본편- 치안정책연구소 김현숙 연구관

치안현장탐구

내·외부고객의 동시만족을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 인천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장문성 경장

입법·판례동향

2012. 9.~10. 국내외 입법 및 판례 소개

연구소 소식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권두언

치안정책의 패러다임 변혁이 필요하다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이웅혁

소 위 ‘묻지마 범죄’가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퇴근 후 지하철역에서 또는 많은 사람이 일상을 보내는 장소를 지나다가 느닷없는 칼부림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보면 이들은 대부분 혼자 사는 듯하다. 나 홀로 지내면서 사회적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전과도 꽤 있다. 사회에 그렇게 많이 투자한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 잃을 것도 별로 없는 듯 보인다. 지금 놓인 자신의 상태에 불만이 많지만 자기 책임보다는 남의 탓이라 여긴다.

오늘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일을 기약하는 규범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타인과 사회적 환경이 자신을 배제시켰고 현재의 불행을 초래했다고 믿고 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아무에게나 분노를 폭발하려 한다. 파괴적 행동을 통해서 평소 상한 기분도 회복할 수 있고, 적어도 난동상황에서는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가뜰이나 충동 조절능력이 부족한 탓에 일정한 촉발상황에 노출되면 아무에게나 칼부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소위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은 아니다. 사실 우리사회는 최근 몇 년간 엽기적 사건이 발생하면 ‘사이코패스’에 의한 범죄인가의 여부에 관심을 가져왔다.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은 치안대책을 마련하는데 문제가 많은 개념이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성공한 지도자들도 그러한 성향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범죄자의 특이성만을 부각시켜 이들을 잉태한 사회문제의 치유에 대한 고민자체를 봉쇄시키기 때문이다. ‘또라이’ 몇몇 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 편리한 도구개념이므로 이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토양이 비옥하게 된 이유를 찾아야 한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모두가 일등이 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누구나가 일등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사회는 일등이 아닌 다른 대체 목표를 쉽게 찾도록 도와주지도 않는다.

따라서 다른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이나 사회적 지지를 발견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 상당수가 겪을 수 밖에 없는 낙오와 좌절은 무책임하게도 그냥 각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방치했다.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인터넷에 빠져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아동음란물을 수백 편씩 수년간 탐닉하며 어린 소녀를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도 이제 쉽게 접한다. 술 먹고 골목의 무법자로 돌변하는 사람도 많아 졌다. 결국 우리사회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는 ‘괴물’을 탄생하게 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경찰이 ‘우리의 괴물’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솔직히 인정을 해야 한다. 순찰을 늘리거나 전담반 몇 개를 더 만든다고 사회 병리와 모순이 해결될 수는 없다. 잠재적 범죄인의 개인적 이상성격을 고쳐줄 수도 없다. 뇌 기능의 하자를 정상으로 돌려놓기는 더 불가능하다.

오히려 경찰 혼자서 무엇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치안의 패러다임을 환경에 맞게 바꾸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치안재(治安財)를 독점하려하지 말고 다른 주체와 공동생산해야 한다. 그래야 비옥해진 범죄토양을 개토(開土)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 고립되고 배제되어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치안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춤형으로 개발하여 공동 보급해야 한다. 자포자기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품게 하는 치안활동이 되어야 한다.

가족해체에 대한 대안으로서 경찰의 단순한 순찰대신 여성가족부와 합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막연한 순찰이나 불심검문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외국에서는 오래전에 검증된 사실이다.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소통을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와 함께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태조사에 근거한 치안정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이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어떤 성장과정을 거쳐 성인이 되었고, 어떤 문화에 몰입해 있고,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더더구나 모른다. 법무부 및 법원과 유기적 치안협력을 이루는 것은 필수적이다. 임명권자보다는 국민의 일상 및 안전에 형사사법기관의 촉수(觸

手)가 놓여야 한다. 또한 법 적용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잠재적 범죄자의 법 준수 의식을 확보할 수 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식이 국민의 가슴에 뿌리를 틀고 있는 한 범죄토양은 개선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PC방보다는 학교와 가정이 더 즐거운 공간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역시 경찰과 여러 관련 주체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다. ‘원톱’이 아닌 ‘멀티 플레이어’ 시스템으로서의 치안재가 필요하다. [PSI](#)

필자 주요약력

경찰대학 (법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공안행정학석사)
미시건 주립대학교 (형사정의/범죄학 석사)
미시건 주립대학교 (형사정의/범죄학 박사)

[경력]

미국 톨리도대학교 형사정책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경찰청 국가대테러 협상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자문위원
서울경찰청 치안정책 자문위원 등 다수 역임

[저서 및 역서]

피해자학 (공역)
범죄학 연구방법론 (공역)
범죄자들의 심리추적 프로파일링(역서)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치안정책리뷰는 치안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www.psi.go.kr).

치안정책리뷰 편집팀

편집팀장 : 김현숙 연구관
편집위원 : 권태형, 신동욱, 이춘삼, 정웅 연구관

치안정책리뷰 편집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446-703)
• 전화: 031-620-2874 (경비) 61-2874
• e-mail: webmaster@psi.go.kr

■ 기획특집

스페인 경찰제도 이해 및 시사점

김재철 경찰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교통대책연구실

들어가는 말

자치경찰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 지도 벌써 약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공약사항으로 적극 추진되기도 한 자치경찰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행안부 자치경찰추진단, 학계 등에서 충분히 선진 외국의 다양한 자치경찰 운영사례를 연구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자치경찰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이 시범 실시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내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반면 지방행정체제의 자치는 이제 정착되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히 대조적이다. 본 보고서에는 기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자치경찰 제도의 모델인 스페인의 경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스페인의 지방자치제도

오랜 독재 정권(1939~75) 이후 1978년도 스페인 개정 헌법은 국가권력의 분산에 관해 특별한 모델을 설정해 놓고 있는 바, 1985년까지 이베리아 반도 및 카나리아, Balears 군도를 망라하는 17개 지역이 중앙정부와 자치권을 놓고 교섭, 스페인은 “Un Estado de las Autonomias”(State of the Autonomies)¹⁾ 형태로서 17개 자치정부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문화, 민족,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정부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언어도 흔히 스페인어라고 하는 카스테야노를 포함 공식언어만 4개로 각 자치주마다 다른 방언을 쓰는 도시도 존재한다.

흡사 영국이나 미국 같은 각 주의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해 주고 중앙정부 사무의 경우에만 조정 통제하는 식의 행정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우리의 인식은 스페인은 지방자치를 인정하는 중앙 집권 체제의 나라로 받아들이곤 한다. 스페인은 왕이 존재하는 연방정부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최근에는 이념보다는 민족이 우선이라는 분리 독립 움직임이 바스크 지방 및 카탈루냐 지방을 중심으로 다른 자치주에 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²⁾

스페인 경찰제도

I. 특징

국가경찰을 근간으로 자치경찰을 가미한 혼합형 경찰제도를 가지고 있다. 1978년 헌법에서 모든 자치단체는 고유의 자치경찰을 보유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의 도입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선택이며 예산·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창설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경찰은 국립경찰(Cuerpo Nacional de Policia)과 군인경찰(Guarda Civil)로 구성되며 경찰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반면 자치경찰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국가경찰의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외에 역사적·문화적 고려로 카탈루냐·나바라·바스크 주의 경우 국방, 외교 등 필요 국가 사무를 제외하고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어 해당 주에서는 주단위의 주경찰을 보유하고 국가경찰 사무를 대신하고 있다. 자치경찰을 포함한 경찰관의 숫자는 약 24만명 정도이며³⁾ 인구가 약 4천 7백만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경찰관의 숫자가 많은 편에 속한다.

<스페인 경찰인력 현황>



II. 국립경찰(Cuerpo Nancional de Policia)

우리의 국립경찰과 계급 및 시스템이 유사하다. 인구 20,000명 이상 도시의 범죄예방·수사 등 일반 치안활동을 담당하고 순경에서 치안감까지의 7개 등급의 계급을 가지고 있다. 전국에 18개 지방청, 대도시 경찰서(52개), 중도시 경찰서(137개) 및 지역경찰서(67개)를 운영하고 있다.

III. 군인경찰(Guarda Civil)

인구 20,000명 이하 소도시의 일반치안 및 도시간 교통관리 업무(고속도로 순찰대 등) 및 국경관리, 해양 경찰 업무 등을 담당 한다. 치안활동은 내무부 장관, 조직·인사 분야는 국방부 장관이 지휘하며 각 주별로 지역 사령부를 두고 예하에 연대·대대·중대를 운영한다.

IV. 주자치경찰(Policia Autonoma)

전체 17개 주 중 현재 4개주(바스크·카탈루냐·나바라·까나리아)에 운영 중이며 기타 14개 주에서는 국가경찰을 통해 업무 수행을 한다. 테러·마약·외국인 관리 등 특수한 국가 고유 사무를 제외한 일반 치안업무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V. 시자치경찰(Policia Local)⁴⁾

기초자치단체마다 헌법 등 법에 따라 자치경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순찰, 교통 등 기본적인 치안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경찰을 보조하

는 임무를 맡는다. 주경찰 및 시경찰 모두 국가경찰에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범죄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한 경우 즉시 국가경찰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와 시사점

경찰제도는 각국의 사회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으로 각국의 역사적 맥락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태도 등에 의해 결정되고 진화하며 그에 맞게 형성된다. 아무리 이론적, 법제적인 연구와 검토들이 충분하게 선행되었어도 그의 적용과 성공 여부는 쉽게 속단할 수도 없고 또한 정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스페인의 사례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 자치경찰의 필요성 여부

현지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경찰 동료들과 시민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한국과 같은 단일 국가경찰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말이다. 과연 그럴까? 한동안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다. 내가 보기에 두 개의 국가경찰기관, 수많은 지역 경찰들, 그리고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들, 과연 이런 제도를 우리가 일부러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제도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여러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린 결론은 경찰기관의 존재 이유인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이다. 첫째 국가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인원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원하지 못한다. 스페인의 경우처럼 인구가 우리의 오천만보다 조금 안되는 4천 6백만 정도 되는데 반해 경찰관 숫자는 우리의 거의 2.5배이다. 국가경찰(국립, 군인경찰 포함)을 합친 숫자는 조금 많은 것에 비해 나머지 부분을 지역경찰과 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색에 따른 치안 서비스가 가능하다. 스페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크고 작

은 자치단체에서 고유의 자치경찰을 운영한다. 교통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쪽 분야의 장비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민자가 많거나 야간에 문제가 많은 동네에서는 순찰 분야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간단한 지휘체계, 시에 소속되어 시를 위해 봉사하는 점이 국가경찰과는 성격부터가 틀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작은 규모의 조직으로 개혁이 용이하고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국가조직은 무겁다. 무언가 한번 일을 하려면 거쳐야 할 단계도 많고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 그에 반해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언제든지 그 지역의 주민의 요구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다.

반면 기관 간 상호 협력과 정보 공유, 그리고 권한 문제들은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오히려 지방정치인 및 시정에 경찰력이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II. 우리 자치경찰의 이상적 모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맞는 여러 자치 경찰 모델이 제시 되었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자치 경찰법안도 등장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경찰이 시범 운영중이다. 하지만 여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도입을 놓고는 여전히 그 조직 및 권한 등을 가지고 이견이 있어 답보 상태이다. 과연 어떤 안이 최상일까?

시행단위에서부터 광역단위(초창기 모델)로 해야한다 아니면 시단위의 모델(현재 모델)등 여러 안이 있지만 어느 것이 딱 어울린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게다가 그 자치경찰의 인사 및 권한, 예산 등을 놓고도 아직까지 다양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스페인의 자치경찰 모델을 직접 보고 연구하고 느낀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자치경찰 제도는 국가경찰의 권한이나 조직 일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

가서는 안 된다.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위해 아직도 턱없이 경찰 인력이 부족하고 이 인원들마저도 밤새 주취자들과 쓸데없는 치안력 낭비를 하면서 진정 민생부분의 경찰활동을 하지 못한다. 국가 경찰 조직은 현 상태의 정원과 조직을 유지하고 자치경찰이 설치된 시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원 및 기능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스페인처럼 지역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 창설 권한 여지를 열어두고 예산 범위와 주민들이 합의에 이르는 자치 단체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는 교통·가정·학교폭력 등 자치경찰이 지역치안에 밀접하게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가경찰력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치안서비스 제공 인원을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창설여부를 논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자율에 맡기면서 필요하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밀접하게 치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일부 분야에는 국가경찰과 동등한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자치경찰이 경비원이나 벌금이나 물리는 경찰의 이미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의 창설이 정치적인 이유나 시장 등 일부의 판단이나 의견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그 필요 여부에 대해 기능에 대해서 그 궁극 서비스 대상인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PSI](#)

1) 1979년 역사, 언어적으로 가장 지역적 독자성이 강한 바스크 지방과 카탈루냐 지방에서 첫 지방자치 선거 실시

2) 스페인에서 전통적으로 지역주의는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수준인 까탈루냐와 바스크지방이 특히 강하지만 최근에는 아라곤, 발렌시아, 까나리아, 안달루시아, 발레아레스, 아스투리아스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럽과 국제축구연맹의 공인을 받지 않은 축구 대표팀까지 구성해 놓고 있으며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대회에 독자적인 출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3)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약 200명, 국가경찰 숫자만 비교해도 우리의 10만보다 1.5배정도 많다.

4) 인구 5,000명 이상의 시는 법률·조례 등에 의거 시 자치경찰을 보유

■ 기획특집

중동 민주화와 이슬람 테러 전망

경사 박 경 기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

개 관

2011년 튀니지를 시작으로 이집트, 리비아, 바레인, 예멘을 거쳐 현재 시리아에서 진행중인 중동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는 중동지역이 세계 에너지 자원의 60%를 점하고 있고 여전히 분쟁의 화약고인 동시에 우리에게도 에너지, 플랜트 협력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경찰 입장에서 중동은 이슬람 테러의 중심지로서 관심의 대상이며 현재 진행중인 중동정변의 추이는 아시아 이슬람권의 정세변화와 더불어 교민보호, 대테러 대책수립에 중요한 변수이다.

중동 테러의 원인

중동 지역은 22개 아랍 국가들과 터키, 이란, 이스라엘, 쿠르드 등 이민족들간에 갈등과 협력의 역학구도에 기반해 상쟁하고 있고 부족주의와 이슬람주의에 뿌리를 둔 정파, 종파, 인종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이다. 더욱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후 지속된 아랍-유대인간 분쟁과 석유판권을 둔 서구 강대국들의 중동경합은 지역정부들의 부패, 무능과 맞물려 이슬람 원리주의의 창궐을 초래했다.

소수의 원리주의 무장단체들은 이스라엘의 아랍침탈, 서구의 자원침탈, 세속 독재정권들의 부패 등 정치적, 종교적 명분 때문에 테러를 자행해왔다. 서구 언론들은 중동 민주화가 “알카에다”로 대변되는 중동테러단체들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중동의 민주화, 다원화는 이슬람적 가치만을 추구하

는 원리주의자들의 테러명분을 감소시킬 요인이 되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몰락한 기득권층이 새로운 테러 주체로 편입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동민주화의 치안적 함의

- 통제된 혼란의 확산 -

치안 담당자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중동 민주화의 중점은 중동사회가 독재정권 축출이후 처하게 될 앞으로의 상황에 있다. 서방 언론들이 보도하는 장밋빛 청사진과는 다르게 아랍의 식자층은 금번 중동 민주화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SNS로 무장한 젊은층만이 민주화의 주축, 혁명을 이끌어가는 이데올로기의 부재, 사전 검증된 시뮬레이션의 부재, 포스트독재의 대안 부재 등이다. 따라서 아랍인들이 실제 우려하는 부분은 미성숙한 사회여건에서의 민주화는 “통제된 혼란”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영미권 치안 기관들도 향후 중동 테러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각종 사회문제와 정치세력간 이해관계에 대한 일체의 고려없이 독재정권의 뇌관만을 제거한 상황은 민주화 발발 2년이 지난 지금 이슬람 원리주의의 발흥, 계엄령 발포, 인종과 종파간 갈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포스트 독재를 이끌 신정부는 이해집단간의 양립할 수 없는 대립으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 걸프 산유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아랍 지역은 민주화를 대가로 상당기간 (짧게는 2015년~길게는 2050년 까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통제된 혼란의 확산” 시나리오는 아랍 지식인들이 가장 우려하면서도 유력하게 보는 우울한 전망이다.

테러주체의 변화

해외 치안 기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중동변혁의 위협성은 여기에 있다. 과거 중동 친미독재정권들의 존속기반은 거의 예외없이 정보, 경찰 기관들로 부족, 종파, 정파간의 갈등을 억누르고 반정부 이슬람 무장 원리주의 단체들까지 통제하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들이었다. 그러나 독재정권과 함께 몰락한 이들은 1차적으로 해당국내 사회불만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고 2차적으로 자국 정권몰락에 기여한 걸프 산유국들에게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몰락한 기득권층이 자국 신정부와 나아가 그에 협력하는 외국에 대해서도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례로, 시리아 반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걸프의 부국(富國) 카타르는 2012.4.17. 자국에서 발생한 쿠데타 기도와 시내 대형백화점 3곳의 연쇄방화를 자국에 대해 보복을 천명한 시리아 정보기관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튀니지의 “엘마즈루끼” 대통령은 아프간, 이라크 등지의 중동 테러리스트들이 북아프리카로 이동하고 있고 민주화로 정국이 불안정한 국가들에 대한 테러 위협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아시아 이슬람의 지역적 심화와 유럽국적의 이슬람 이주민 자녀들

2011년 한국을 오간 아랍, 중동권인은 7천여명, 아시아지역 이슬람권인들은 10만여명에 달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 서남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이슬람은 이슬람의 본류인 아랍지역보다 자체적으로 심화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서남아시아 지역이 강한데 아시아의 이슬람은 과거 중동지역이 밝아왔던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답습될 경우, 중동의 혼란을 그대로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유럽국적의 아랍인 이민 2-3세대는 각국의 치안기관이 눈여겨 봐야할 또 다른 관심대상이다. 아랍권 테러리스트들의 주요 공급원이 유럽으로 이주한 아랍이주민의 자녀들인 점은 아시아권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국적의 아랍인 이민 후세대들은 외형상, 여권상으로 그가 아랍인인지 유럽인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웃 일본의 이슬람 커뮤니티는 유럽출신의 아랍인 후세대들이 일본인 여성 들과 혼인을 통해 조성된 특징이 있다고 한다. 물론, 조부모나 부모가 아랍인이었다고 해서 우리가 유럽인들처럼 그들을 차별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대테러 예방활동에 부담요인이 되는 것은 현실이다.



글로벌의 심화시대에 어제 발생한 국제사건은 오늘 국내에서 시위 등의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부상은 아시아 이슬람의 지역적 심화, 새로운 에너지 경합지역의 등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과거 서구 Vs 이슬람의 대립구도를 아시아로 옮겨놓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외협력과 한류 확산이 대외기관들의 몫이라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교류, 특히, 인적교류의 부담은 고스란히 치안기관의 몫이 되고 있다. 더 이상 서구 시각에서 서방 테러전문 기관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이유이고 한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PSI](#)

■ 연구논문

해외 경찰관련문헌 조사방법 -일본편-

김 현 속 선임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수사구조개혁연구실

들어가며

일본의 근대적 경찰제도는 1871년 10월에 동경부가 치안유지를 위해서 나졸 3,000명을 임용한 것으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 후 1874년 당시의 내무성에 경부요가 이관·설치되었으며, 18875년 3월에 ‘행정경찰 규칙’이 제정되면서 행정경찰중심의 경찰기구가 정비되었다. 패전 후 일본은 1947년 12월 경찰법을 제정하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이원화된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이후 1954년 전면개정을 통하여 도도부현경찰(都道府県警察)로 일원화된 현재의 경찰제도가 마련되기에 이른다.

한편 일본은 법체계상 성문법 국가이므로 앞서 소개한 영미권 국가에 비하여 판례보다 법령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법률 및 판례, 실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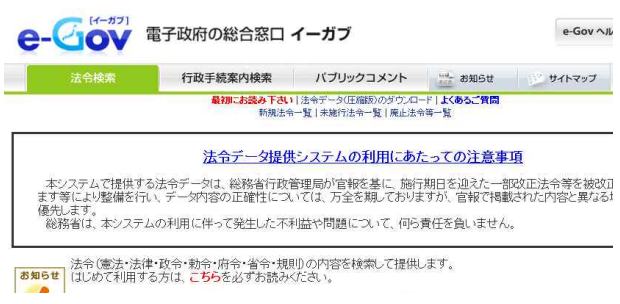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육법전서 등 각종 법전을 편찬하고 있으므로 오프라인에서 법령의 원문을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작업은 최신 개정법률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각종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온라인 법률 정보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 통합창구인 e-gov에서 최신법령을 제공하고 있는데(law.e-gov.go.jp) 분야별, 음도별 색인으로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국헌법은 최고재판소를 최상급법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하급재판소의 설치 여부는 법률(재판소법)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하급 재판소는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 등 4가지 종류가 있다. 일본에서도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심제도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3회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최고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최고재판소민사판례집(民集)』과 『최고재판소형사판례집(刑集)』에 수록된다. 최근 선고한 주요판례는 각 심급별로 재판소 통합사이트(www.courts.go.jp)에서 검색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법령, 판례 등을 제공해온 로앤비(LawnB)에서도 일본 법령 및 판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본어구사에 능숙치 않은 이용자를 위하여 다소 불완전하기는 하나 번역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유료사이트로 第一法規情報統合データベース(D1-Law.com)가 있다. 정부의 법령정보 사이트는 현행법령만을 검색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과거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이력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할만하다.

그리고 일본 국회의 회의록은 국회회의록검색 시스템(kokkai.ndl.go.jp)을, 양원에 제출된 법안은 중의원(www.shugiin.go.jp)과 참의원법제국(houseikyoku.sangiin.go.j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의 자료를 검색하는데 먼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일본 경찰청(www.npa.go.jp)에서 제공하는 백서 및 통계 부분이다. 昭和48년(1973)부터 현재까지의 범죄백서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범죄통계를 최근 10여년간을 기준으로 함께 게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련 훈령, 법령, 통달(通達)도 위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도교의 치안을 맡고 있는 곳을 경시청(警視庁)이라고 하는데, 경시청은 자치경찰조직으로서 도(都)경찰 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www.keishicho.metro.tokyo.jp). 경시청에서는 경찰청과 별도로 최근 10년간의 범죄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범죄정보지도를 이용하여 범죄발생상황을 게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 범죄지도에서는 침입절도, 자동차절도 등 주로 절도사건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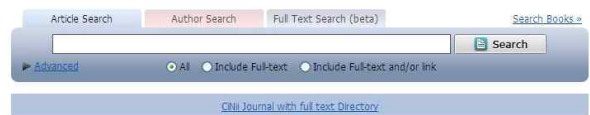


학술논문집 등

일본은 온라인 자료보다는 아직 오프라인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온라인으로 학술지 등의 원문을 검색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원문을 구독하지 않는 한 일본 외의 도서관에서 문헌을 구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출처와 색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출판사 납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도서와 잡지가 가장 많은 곳은 국립国会도서관(国立国会図書館)의 검색사이트(iss.ndl.go.jp)이다. 여기에서는 최근까지 발행된 도서, 논문, 신문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온라인 논문정보 DB는 CiNii라고 불리는 국립정보학연구소(国立情報学研究所)의 '일본저널인용색인'(ci.nii.ac.jp)이다. 주로 일본의 학술지와 연구논문의 논문정보(초록, 색인, 목차, 인용지수 등)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CiNii나 NII에서 검색할 수 있는 일본의 논문을 한글로 쉽게 검색하고 원문의 복사신청을 할 수 있는 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해외학술지 논문 복사서비스(www.riss.kr)다.

그 밖에 법원도서관에서는 외국법률용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의 법률 용어를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한글로 검색하면 해당하는 외국 법률용어를 찾을 수 있고, 로앤비에서도 한글을 입력하면 일본어로 문자를 바꾸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쉽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PSI](#)

(다음 호에서 계속)

■ 현장의 소리

내·외부고객의 동시만족을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

장문성 경장
인천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들어가며

최근 어린이 성폭행사건과 ‘묻지마식’ 칼부림 사건 등 강력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경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특히 인천 부평시장 골목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사건은 현장 부근을 지나던 순찰차가 피해여성의 도움을 외면하였다고 하여 각종 마스크와 언론의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성폭력 및 강력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하달하여 전국적으로 목검문과 불심검문이 시행 중인 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침해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불심검문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들이 높아지면서 트위터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불심검문 대처요령’이라는 제목의 글들이 순식간에 전파되고 있다. 즉 강력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청의 정책 대안이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경찰 내부적으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서 오늘날 경찰조직이 당면한 최대과제인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사회와 지역경찰관의 시각에서 21세기 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원인

오늘날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초점은 범죄해결 차원에서 더 나아가 주민과 더불어 주민의 관심 사항을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데 있다. 하지만 실정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 원인은 바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전통적 경찰 행정방식에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고객중심의 치안행정을 표방하면서도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탈피하지 못하여 내·외부고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는 상급기관의 획일적 정책지시가 최일선 지역경찰관들의 소극적인 근무태도를 가져오게 하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경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나쁜 방향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관료주의적 조직문화>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거리 불심검문이 흥기 소지자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럼 시민들의 찬반논쟁이 과열되고 경찰과시즘의 부활이라고까지 칭하여지는 것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료주의적 치안정책의 실시에도 있다.

시민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오늘날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시민들이 객체로 전락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경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하향식의 치안행정은 지역경찰관들로 하여금 법정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의 범집행에 머무르게 한다.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 하에서의 불심검문과 같은 범죄예방 경찰활동은 지역경찰관 스스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공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주된 원인인 것이다.

<전통적 방식의 경찰업무평가 및 인사제도>

지역경찰관들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원인 중 또 다른 이유는 지역경찰관으로서 권한의 한계에 쉽게 직면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기관의 성과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지역경찰관들에게 절도발생건수를 줄이도록 하는 무언의 압력이 일선서와 지구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내부고발제도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면서 하향식의 인사평가는 지역경찰관이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양질의 정책들이 언제 무너져버릴지 모르는 모래위의 탑처럼 낡은 관행들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 오고 있는 것이다.

내·외부 고객만족을 위한 개선방안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치안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무리 이상적인 치안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지역경찰관들의 실천의지가 약하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의 실시>

치안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그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적극적인 경찰방문으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하향식의 일방적인 정책시기가 아니라 상향식의 정책수단의 발굴이 필요하다. 즉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경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발적으로 정책수단이 마련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지역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성과평가기준 및 인사제도의 공정성 확보>

지역경찰관들이 보다 공정하고 확신에 찬 범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확실한 마련과 더불어 전통적 방식의 성과평가기준과 인사제도가 탈바꿈하여야 한다. 상급기관 또는 직장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지역경찰관 개개인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관의 성과평가기준은 지역주민의 치안협력정도 등 지역공동체의 범죄대응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상향식 평정이나 다면평정의 인사평가제도를 통해서 지역경찰관들이 상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치며

21세기 경찰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역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치안서비스의 제공에 있다. 이는 곧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이 기존의 관료제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경찰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제도를 통하여 주민 입장에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각종 범죄로부터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주체로서 지역시민과 지역경찰관의 동시만족을 이룰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당연한 결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PSI**

■ 국내외 입법 및 판례 동향

2012. 9.~10. 입법 및 판례 소개

국내 주요 입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대통령령 제24091호, 2012. 9. 7.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제314호, 2012. 9. 12.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1402호, 2012.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모범운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복장 및 장비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돌, 유리병 등 운전자가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대통령령 제24134호, 2012. 10. 9. 일부개정
- 시행: 2012. 10. 9.
- 주요내용

·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근무연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시간제근무를 활성화하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도모하며,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을 단축하여 능력있는 경찰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동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19호)

· 경사 및 경장 등에 대한 경력평정 기준을

개선하여 성과 우수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상의 강등 관련 규정을 반영함.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제24117호, 2012. 9. 21. 일부개정
- 동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20호, 2012. 10. 19.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청 본청과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1,010명(경정 103명, 경감 103명, 경위 3명, 경사 193명, 경장 304명, 순경 304명)과 세종시 정부청사경비대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27명(총경1, 경감 1명, 경위 8명, 경사 10명, 경장 7명)을 증원함.

·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1개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함

·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찰청 본청에 통합 민원콜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소속기관의 전화상담원 165명(기능9급 165명)을 본청으로 이체함.

·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경찰청에 일반직 공무원 2명(8급 2명)을, 그 소속기관인 경찰대학에 일반직 공무원 1명(7급 1명)을, 지방경찰청에 경찰공무원 376명(경감 10명, 경위 21명, 경사 63명, 경장 188명, 순경 94명)과 일반직공무원 27명(7급 4명, 8급 15명, 9급 8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국내 주요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 **사건의 개요**

· A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등은 2009. 2. 15. 01:00경 경찰관 정복 차림으로 검문하던 중, 검문검색 지령이 무전으로 전파되면서 범인의 인상착의가 알려짐.

· 위 경찰관들은 무전청취 직후 자전거를 타고 검문 장소로 다가오는 갑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지나쳤고, 재차 소속과 성명을 고지하고 자전거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함.

· 이에 다른 경찰관이 갑을 따라가서 가지 못하게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갑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범인 취급한다고 느껴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거세게 항의함.

· 경찰관들은 갑을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 2심 법원은 위 경찰관들의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위법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저항행위로 행하여진 상해 및 모욕도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함.

- **판결요지[원심판결 파기환송]**

·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실시 중이던 경찰관들이 위 날치기 사건의 범인파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을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그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의심되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정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임)

· 또한 공무집행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상해 및 모욕 부분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원심판결 파기환송)

● **헌법재판소 2012. 10. 25. 2012헌마107 결정**

[형법 제6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1. 9. 19.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 그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위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노역장 유치명령의 집행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2012. 2. 4. 위 노역장유치처분의 근거조항인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함.

- **결정요지[각하]**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벌금형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아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함. [PSI](#)

(정리: 김현숙 선임연구관)

치안정책 학술세미나 개최

치안정책연구소(소장 한광일 경무관)는 2012년 9월 2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치안환경의 진단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치안정책 이슈를 다음의 4개 세부 주제로 나누어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제1세션 : 미래 치안환경 전망과 치안정책의 방향

제2세션 : 치안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찰 조직 발전 방안

제3세션 : 무동기 범죄의 실태와 대책

제4세션 :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수사체계 개편 방안

한광일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기용 경찰청장의 축사로 진행된 이번 학술세미나에는 조호대 교수(순천향대, 제1세션), 황성원(군산대, 제2세션), 김상균(백석대, 제3세션), 이동희(경찰대, 제4세션)가 발제를 맡고,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계 전문가, 현장 경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환경을 진단하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 수사구조 개편 등 다양한 치안인프라 확충 방안이 중점 논의 되었다.

앞으로도 치안정책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당면한 치안현안에 대한 사회각층의 의견이 경찰청의 정책에 적시에 반영되어 ‘국민이 믿고 의

지할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관 동정

◆ 이기수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10월 23일 숙명여대에서 개최된 ‘법과 심리 포럼’에서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 권태형 연구관(정책기획연구실)은 10월 30일 제171기 경감기본교육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 김현숙 연구관(수사구조개혁연구실)은 9월 21일에 열린 치안정책 학술세미나에서 ‘무동기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PSI](#)

- ☆ ‘현장의 소리’에 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 현장에서 느낀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앞으로도 일선 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 전국 현직경찰관 중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은 학위논문을 1부 보내주시면 치안정책 발전의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안정책리뷰를 보신 후 편집실 앞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며,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내실 내용

- 이름, 근무지, 연락처, 이번 호에서 좋았던 기사
- 치안정책리뷰에서 다루기 원하는 내용
- 기타 치안정책리뷰 발간에 관련된 의견

□ 보내실 곳

- 인터넷 : webmaster@psi.go.kr
- 내부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현숙

◆ 치안정책연구소 소개

치안정책연구소는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우리 경찰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경찰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찰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수립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안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최신 국내외 연구자료의 DB(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 토대의 확충과 해외 치안정책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에도 힘을 기울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안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적실성 높은 연구성과 창출로 치안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경찰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치안정책분야의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PSI](#)

◆ 치안정책연구소 부서별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정책기획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치안수요 예측 및 대응방안 수립 • 기획·정책개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감사·정보통신·홍보 분야 등에 관한 연구 • 총무·행정·보수·후생복지 등에 관한 연구
사회안정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보활동 및 국내 사회안정 대책 연구 • 경찰 경비활동 및 대테러 대책 연구
안보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을 대비한 치안분야의 연구 • 남북교류 및 북한이탈주민 관리방안 연구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분석 •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및 발전방안 연구
생활안전 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 및 소년·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 경찰외근, 민간경비 업무 등 중장기 생활안전 대책 연구
교통대책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교통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통업무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범죄수사 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범죄분석 및 범죄수사에 관한 연구
수사구조 개혁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수사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 • 수사경찰제도 및 수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운영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보안, 인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 청사유지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소 홈페이지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소내 사무와 다른 연구실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홍보업무 • 연구계획 수립·관리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간행물의 인쇄·배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 섭외 업무

치안정책연구소 조직도

